

【 주간이슈 】

국제보험회계기준, 2단계 초안의 공개와 향후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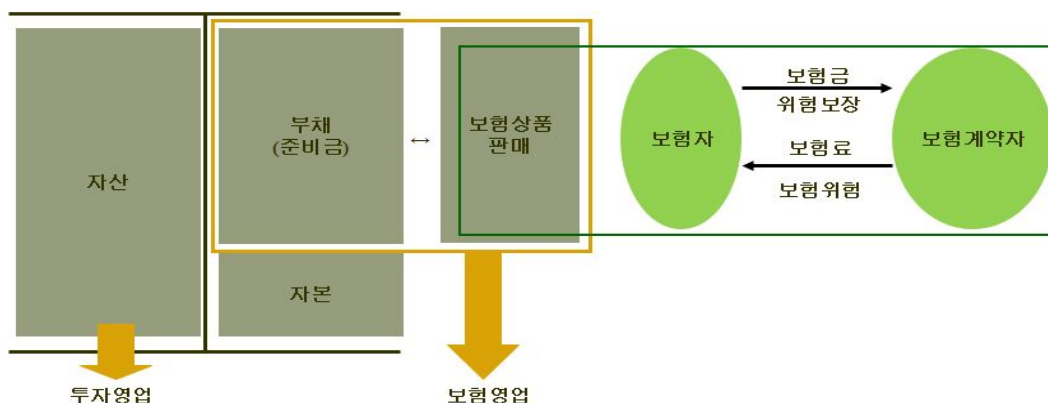
김해식 전문연구위원, 김소연 부연구위원

- 모든 금융상품을 시가(時價)로 표시하는 금융회계의 기본 틀이 2011년에는 완성될 예정이며,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초안이 공개됨.
 - 현재 금융회계는 3단계, 보험회계는 2단계로 나뉘어 작업이 진행 중임.
 - 금융회계와 보험회계 모두 1단계 기준서가 확정된 상태이며,
 - 이후 단계의 경우에도 초안이 마련되어 2011년에는 확정될 예정임.
 -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1년에는 1단계 기준이 적용되는 데 이어, 대략 2013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가회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.
-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가 적용될 대상에는 은행 등 보험회사가 아닌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보험계약이 포함됨.
 - 1단계 기준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으로만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.
 - 그러나 2단계 기준이 시행될 경우, 은행, 신용카드회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험회계기준이 적용될 것임.
- 보험산업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2단계 초안이 제시됨으로써 최종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.
 - 보험시장의 유동성 제약을 반영한 이행가치와 유동성프리미엄 고려, 단기 손해보험에 대한 현재가치 적용 제한, 이익의 초기 인식 금지 등 그동안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
 - 그러나 2단계 초안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.
- 한편,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마진 부분에 대한 최종 대안이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현재의 보험회사 수익성 분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.
 - 준비금의 현재가치, 변동성과 이익을 반영하는 마진, 이자율, 투자수익을 포괄하는 손익 정보는 최근 보험회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내재가치 분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.

1. 검토 배경

-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¹⁾는 공정가치회계를 기본 틀로 하는 일련의 금융회계 기준서 초안들을 공개하고 2011년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, 향후 모든 금융상품은 재무제표에 시가(時價)로 표시될 것임.
- 일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서 제정 작업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, 금융상품의 분류와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1단계 기준(IFRS 9)²⁾이 제정되었음.
- 금융상품의 가치 하락 등을 다루는 2단계 초안이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 중이고, 헤지회계를 다루는 3단계 초안이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임.
- 한편,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서는 금융회계기준과 별개의 기준서로 마련되고 있으며, 그 결과물이 지난 7월에 2단계 초안의 형태로 공개됨.
-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통하여 보험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투자활동의 자금 조달에 기능이 한정된 일반 금융상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서 작업이 진행 중임.
- 2단계로 진행되는 보험회계의 경우 기존 회계관행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1단계 기준(IFRS 4)이 제정되어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1단계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며, 이번에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2단계 초안이 공개된 것임.

<그림 1>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영업과 투자영업



1) IASB :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
2) IFRS :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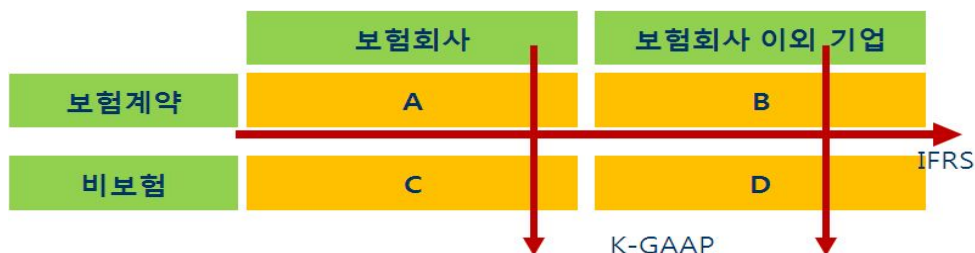
- 본고는 2단계 초안에 공개된 공정가치회계의 대상이 될 보험계약과 구체적인 측정 방식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.

2. IFRS 4, 2단계 초안의 주요 내용

가. 타 금융권의 보험계약도 대상

- 2단계 초안은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, 여기에는 금융보증, 무역신용보험, 일부 신용장 등도 포함
- 현행 회계관행(K-GAAP)이 기업(영역)을 중심으로 하는 종적인 회계기준이라면, IFRS는 기업이 아닌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횡적인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.

<그림 2> IFRS 4, 2단계의 적용 범위



- 이에 따라 2단계 기준은 모든 보험계약(<그림1>의 A와 B)을 대상으로 함.
- 1단계 기준은 현행 회계관행을 인정하는 임시 기준의 한계 때문에 적용 대상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(<그림1>의 A)에 한정하고 있음.
- 이는 다른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사보험이나 금융보증 등에 대하여도 보험회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임.
- 향후 은행 등은 보험계약이 결합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보험요소와 금융요소를 분리(unbundling)하여 회계처리 해야 할 것임.
- 현재 카드회사 등이 대출계약의 일부로서 채무면제 · 유예계약(DCDS)³⁾의 경우 대출에는 일반금융회계를, DCDS에는 보험회계를 분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.

3) DCDS : 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contracts. 자세한 내용은 주간이슈, “CDS와 DCDS, 동일 위험, 동일 규제의 원칙 적용해야” (2010.4.26) 참조.

- 그러나 2단계 초안이 분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“밀접한 관계” 등은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여 실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나.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한 할인율 적용

□ 보험회사의 부채(준비금)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장부에 기록될 보험부채의 시가는 모형을 통해 추정될 수밖에 없음.

-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시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기준에⁴⁾ 따르면, 보험계약이나 신용부도스왑 등은 그 시장가치가 관찰되지 않거나 관찰되더라도 장부에 기록될 만큼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“level 3 금융상품”에 해당
- IASB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료, 보험금, 사업비 등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로 정의함.
 - 이때, 최근의 가정이 적용되며,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대현금흐름을 고려할 것을 요구함.
- 따라서 하나의 현금흐름 추정치를 이용하고 판매 시의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행 회계관행과 비교하여 2단계 기준은 보다 복잡한 모형과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함.

□ 2단계 초안은 보험부채의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의 측정 속성을 이행관점으로 전환하고, 현재가치 산출 시 할인율을 유동성프리미엄으로 조정함.

- 최근까지 IASB는 부채를 시장에 내다판다는 유출 관점을 제시해왔으나, 유동성이 낮은 보험부채의 측정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.
 - 유출관점에서는 부채를 측정할 경우 시장정보의 활용이 강하게 요구됨.
- 2단계 초안은 보험부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 부채를 청산하는 이행 관점을 제시함.
 - 이 경우 시장에서 관찰하기 힘든 사업비 등 회사 고유정보의 활용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으나, 공정가치도 원가도 아닌 불분명한 접근이어서 부채의 마진 등과 관련하여 기준제정자들 간에 이견을 초래하고 있음.

4) 공정가치평가(fair value measurements)에 관한 초안이 최근 공개되었음.

□ 그러나 무위험이자율에 추가될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실무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

- 무위험이자율이 할인율로 제시된 것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마진을 따로 고려하기 때문이며, 불확실성을 제거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출에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함.
- 그러나 무위험이자율에 추가될 유동성 프리미엄의 경우 보험계약의 형태, 보험계약 안의 해약옵션이나 이율보증 등에 따라 유동성 정도가 달라지므로 프리미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□ 2단계 초안에 따라 부채 가치를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할 경우,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, 새로 측정된 부채 규모는 기존 규모보다 늘어날 것임.

- 기존 회계관행은 하나의 현금흐름 추정치에 대하여 투자(자산운용)수익률 등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부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고 있음.
 - 물론 투자연동형이나 배당계약 등과 같이 보험금이 투자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투자수익률이 적절한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.
 - 그러나 부채의 가치가 자산구성과 그 투자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자산운용수익률의 사용은 부채의 가치를 과소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
- 이번 초안에서 제시된 할인율은 여전히 투자수익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부채를 시가로 전환할 경우 가치가 증가하여 준비금의 추가 적립은 불가피할 것임.
 - 다만, 할인율인 무위험이자율에 유동성프리미엄이 더해짐으로써 부채 시가 평가에 따라 준비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

다. 일부 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에는 예외 적용

□ 2단계 초안은 단기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현재가치모형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, 구체적인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- 2단계 초안은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정가치(현재가치)모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
- 그러나 1년 만기의 손해보험에 대한 현재가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미경과보험료방식이 허용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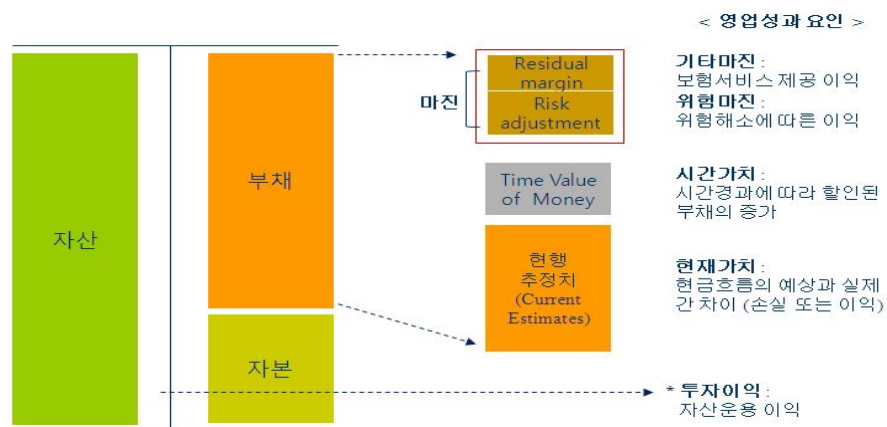
- 다만, 1년 만기의 손해보험이라도 보험금의 지급패턴, 자동 갱신, 요율규제 여부 등에 따라 지급준비금의 현재가치 측정이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에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라. 마진의 구분과 이익 및 비용의 인식

□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다르면, 보험계약들 간의 기대현금흐름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적립해야 할 준비금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험마진으로 차별화함.

- 그러나 공동작업자인 미국 회계기준위원회⁵⁾는 위험마진을 다른 마진들과 구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IASB와 입장을 달리 하고 있음.
 - 이에 2단계 초안은 두 위원회의 견해를 모두 담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.

<그림 3> 보험부채의 구성과 수익창출 요인



- IASB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부분(위험마진)과 보험서비스 제공으로 얻을 이익을 반영하는 부분(기타마진 또는 잔여마진)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
 - 2단계 초안은 위험마진을 구분할 경우 매기마다 위험마진을 평가하여 조정하며, 그 조정분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것을 제시함.
 - 기본적으로 위험마진은 사고빈도보다는 사고심도가 큰 보험계약, 단기보다는 장기보험계약, 현금흐름 분포가 널리 퍼져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큰 마진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.

5) 2007년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프로젝트의 공동작업자로서 참여하고 있음.

- 그러나 미국 회계기준위원회는 측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험마진의 구분보다는 통합된 하나의 마진(단일마진)으로 표시하자고 주장
 - 따라서 단일마진과 위험마진을 비교하면, 매기마다 평가되는 위험마진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손실이 인식될 기회가 더 많을 것임.
- 한편, 보험상품 판매로 기대되는 이익은 (기타)마진으로 반영되어 부채 가치에 포함되었다가 향후 이익으로 실현되므로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이 인식되지 않음.
 - 그동안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전인 보험상품 판매와 동시에 이익이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.
 - 이에 IASB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의 이익(day 1 gain)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수익 인식 원칙을 채택함.
 - 따라서 2단계 초안은 (기타)마진으로 초기 이익을 흡수하여 상품 판매 시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동 마진은 시간 경과와 보험금 지급기간 등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으로 실현됨.
- 신계약비 중 변동비만 부채 가치 산출에 포함됨으로써 동일 상품이라도 판매채널에 따라 마진이 다르게 나타나며, 이에 따른 영향은 전속채널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크게 나타날 것임.
 - 2단계 초안은 신계약비의 경우 보험계약 판매, 심사 등의 변동비를 부채의 현재가치 산출에 포함시키고, 인건비 등 다른 비용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함.
 - 이에 따라 판매채널에 따라 (기타)마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.
 - 비전속채널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당기비용은 적고 (기타)마진이 큰 반면,
 - 전속채널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(기타)마진이 낮고 당기비용이 커서 판매 초기에 손실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임.

3. 2단계 초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

- 2단계 초안은 이전의 논의와 비교하여 보험산업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유연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안에 대한 불확실성은 축소되었으나, 2단계 기준 적용으로 지금보다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부담은 불가피할 것임.

- 이행가치 개념의 도입, 무위험이자율에 대한 유동성프리미엄의 추가 등 그동안 보험부채를 시가로 표시하는 데 따른 측정 상의 이견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초안이 제시됨으로써 2011년 최종안 마련이 가실화될 것으로 예상됨.
 - 또한 2단계 기준은 기존의 회계관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은 불가피하여 보험회사 등은 2단계 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본 및 수익성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.
- 국제회계기준은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으므로 2단계 초안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므로 보험요소와 투자요소의 분리, 유동성프리미엄의 설정 등에 대해서는 실무에 적용하는 데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, 이를 위해 국내 산업 현장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임.
 - 2단계 기준은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나 보험계약과 금융계약을 구분하는 분리기준이 모호하고, 일부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현재가치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배제 기준이 없어 세부 실무지침이 필요함.
- 2단계 초안이 적용될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성과를 좌우할 수익성 요인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를 중심으로 한 경영분석이 보편화 될 것임.
- 최근 일부 상장 보험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내재가치 분석 방식은 2단계 초안을 통해서 보다 보편화된 경영분석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됨.
 -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익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. KiRi